



[2017.9.22.] [258 , 2017.9.22.,]

() 044 - 200 - 5712, 5711

1 () 「 」

1 2() 「 」 (" ") 2 1 2 " "

. < 2017.9.22.>

1. :

2. :

가. : (閉團)

25

25

(車渡船)

[2015.7.7.]

2 () 4 1

1 ()

. < 2008.3.14., 2009.3.26., 2013.3.24., 2015.1.8.,

2015.7.7.>

1. ()

2.

3. ()

1

「 」 36 1

, 1

. <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1. ()

2. ()

1 2

1. .

2. (

)

3. . ()

4.

5. 3

<2016.12.8.>

4 4

1

가 가

1

4 1

2

.< 2008.3.14., 2013.3.24.,

2015.1.8.>

3 ()
")

4 2 ("

가 가

1 2 , 가

[2015.7.7.]

3 2()

4 4

.< 2013.3.24., 2015.1.8., 2015.7.7.>

[2012.11.30.]

3 3(가)

4 3

가 가

.< 2015.12.31.>

1. , 「 」
2. 「 」 (" ")
3. 「 」
4. ,

1 가

[2015.7.7.]

4 <2015.7.7.>

5 ()

5 1 5

2 .

5 1 5

(船齡) 20

.<

2008.3.14., 2009.1.13.>

2 20

5 1

, 25 [(FRP) 1 2 2

]

가 가

5 1 .< 2009.1.13., 2013.3.24., 2015.7.7.>

2 3 「 」 23 1 1

(1 2 2)

.< 2009.1.13., 2015.7.7.>

2 3 , 1 ,

1 1 .< 2009.1.13.>

5 1 5

2 2 .< 2015.7.7.>

5 2()

5 2

(島嶼民)

가 1

2 2

1

1 3

[2015.7.7.]

6 ()

6 1

2

3

(

)

「 」 36 1

(

)

.< 2008.3.14., 2009.3.26., 2011.4.11.,

2013.3.24.>

1. 가

2. ()

3.

1 3

2 3

6

4

.< 2008.3.14., 2013.3.24.>

7 ()

7 1

5

()

.< 2008.3.14., 2013.3.24.>

1

1.

2.

3.

7 4

.< 2017.9.22.>

8 <2017.9.22.>

9 () 10

"

"

1

.< 2008.3.14., 2013.3.24.>

10 1 "

"

「 가

」 33

1 2

.< 2008.3.14., 2010.1.29.,

2013.3.24.>

10 () 11 1
6 ()
. < 2008.3.14., 2015.1.8.>

1. 가
2. (區間制)
3. ()
(4) 6
() 11 1
7 1 1 3
. < 2008.3.14., 2011.10.19., 2013.3.24., 2015.1.8.>
11 4 .< 2008.3.14.,
2013.3.24., 2017.9.22.>

1. 가
2. 가

10 2() 11 2 1
7 2 ()
. < 2013.3.24., 2015.1.8.>

- 1.
2. ()
1 .

- 1.
2. .
3. 가

- 4.
- 5.
- 6.
7. . .
8. .
- 9.

1
, . 가 가

1. .
 - 2.
 - 3.
- [2012.11.30.]

10 3() 11 3 1
. .

- 1.
- 2.
3. 「 」

4. (「 2 1)
5. (「 15 2 가)

1

(가 ,)

1 2

[2015.7.7.]

10 4() 11 3 2 3 " " 「 」
57

11 3 2 4 " "

1. , (船種), , ,

2. 21 . ,

3. 19 1 11 18
7 3 (1 2 3

3) 가 가 , (半期)
가 가

3

[2015.7.7.]

11 (가) 12
가 8 (가)
. < 2008.3.14., 2013.3.24., 2015.1.8.>

12 <2015.7.7.>

13 () 「 」 (" ") 10 1
. < 2015.7.7.>

1 3 , 10 2 가 10

11 1

1.

2.

3.

4. 가 (10 2)

5.

1 3 「 가

」

14 () 16 3 12 1
9

. < 2008.3.14., 2015.1.8.>

14 2() 17 1 2 9 2

. < 2013.3.24., 2015.1.8.>

1. 가. . ()

2. , : , [2012.11.30.]

15 () 18 1 가 가 . < 2013.3.24., 2015.1.8., 2015.7.7.>

1 가 . < 2013.3.24., 2015.1.8.> [2012.11.30.]

15 2() 21 가 가

2 3 . < 2015.7.7.>

1 10 2 . < 2016.12.8.> [2012.11.30.]

15 3() 21 1 10 3 14

7 , . < 2015.7.7.> 3

- 1.
2.
3. 가
4.
5. <2015.7.7.>

21 1 2 . < 2015.7.7.>

[2012.11.30.]

15 4() 21 1 "

- 1. (代替)
2. (「 」 15 2 가)

3.

4. (,)

5.

6. ,

[2015.7.7.]

[15 4 15 7 <2015.7.7.>]

15 5() 21 2

1. : 15 3 1 가

2. : 가 (" ")

가 10 6

1 2

[2015.7.7.]

[15 5 15 8 <2015.7.7.>]

15 6() 21 4

1.

2.

「 」 58 2 1

1

[2015.7.7.]

[15 6 15 9 <2015.7.7.>]

15 7() 21 2 1

() , ,

21 2 4

21 4 1 1 2 2

(" ") ,

()

「 」 7 가

, 1 2 2

[2015.7.7.]

[15 4 , 15 7 15 10 <2015.7.7.>]

15 8() 21 3 4 " "

< 2013.3.24., 2015.7.7., 2016.12.8.>

1. .
2. , 가
- 2 2. 22 2 (" ")
- 3.

[2012.11.30.]

[15 5 , 15 8 15 11 <2015.7.7.>]

15 10() 「 」 4 3 , 3 3

가 3 (가) . <

2015.7.7.>

가 . < 2015.7.7., 2017.9.22.>

1. .
2. ()
- 2
- 3.
4. 15 11 2 2
5. 「 」 6 1 2 「 」 9 1

[2012.11.30.]

[15 9 , 15 10 15 11 <2017.9.22.>]

15 11() , 15 10

가 . < 2015.7.7., 2017.9.22.>

. < 2014.11.19., 2015.1.8., 2015.7.7.>

[2012.11.30.]

[15 10 , 15 11 15 12 <2017.9.22.>]

15 12() 22 3 . <

2015.7.7., 2016.12.8.>

1. .
- 2.
- 3.
- 4.
5. .
6. ,
- 7.
- 8.

9. 21 2 5

10.

11. (海圖)

12. (逆呼出)

13. ()

1.

2.

3.

4.

5.

< 2014.11.19., 2015.1.8., 2015.7.7., 2017.7.28.>

1

< 2016.12.8.>

[2012.11.30.]

[15 11 , 15 12 15 13 <2017.9.22.>]

15 13() 22 3 6

2014.11.19., 2015.1.8., 2015.7.7., 2015.12.31.>

< 2013.3.24., 2015.7.7.>

[2012.11.30.]

[15 12 , 15 13 15 14 <2017.9.22.>]

15 14() 22 4 가

1

가

가 1

가

가

< 2014.11.19., 2015.1.8.>

[2012.11.30.]

[15 13 , 15 14 15 15 <2017.9.22.>]

15 15() 22 5 가

< 2014.11.19., 2015.1.8.>

가

.< 2014.11.19., 2015.1.8.>

[2012.11.30.]

[15 14 , 15 15 15 16 <2017.9.22.>]

15 16() 22 7 가

()

< 2015.7.7.>

1

.< 2013.3.24., 2015.7.7.>

[2012.11.30.]

[15 15 <2017.9.22.>]

16 () 24 1 2

11 ()

. , 「 」 7 1

가

.<

2008.3.14., 2009.3.26., 2009.7.1., 2013.3.24., 2015.1.8., 2017.9.22.>

1. (, 「

」 2 1 3 가)

2. (100)

3. <2017.9.22.>

1

. 「 」 36 1

. , 1

.<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1. (, 「

」 2 1 3 가)

2. ()

1 2

1. ()

2.

3. ()

4. 3 ()

5.

1

.< 2011.12.13., 2013.3.24., 2015.1.8.>

1. 32 8

2. 3

3.

24 1 2

12

.< 2008.3.14.,

2011.12.13., 2013.3.24., 2015.1.8.>

16 2() 24 4

11 2

1. { (「 」 2 1 3 가) }

2. 1 「 」 36 1 . , 1

1. { (「 」 2 1 3 가) }

2. ()

[2017.9.22.]

[16 2 16 3 <2017.9.22.>]

16 3() 32 1 4 4

. < 2016.12.8., 2017.9.22.>

1. , 3 3 1 가 . , (浮船) , 100

가

2. 「 」 .

3. (曳船) 1 2

4.

5.

[2015.7.7.]

[16 2 <2017.9.22.>]

17 ()

25 2

13

. < 2008.3.14., 2013.3.24., 2015.1.8.>

1

1

14

. < 2008.3.14., 2013.3.24.,

2015.1.8., 2017.9.22.>

1

가

90

90

. < 2008.3.14., 2013.3.24.>

18 () 26 1

7 1 2

. " 7 1 " " 26 1 "

26 4

.< 2017.9.22.>

19 () 27 3 .< 2015.7.7.>

27 1

15 (17)

< 2015.7.7.>

1. 가

2. 24 (

15)

3. 15

4. 15 4

1 2 2

5. 가 25 2

6. 1 5 가

20 () 28 1

5

2008.3.14., 2013.3.24.>

28 2

7

15

() () 16

.< 2008.3.14., 2013.3.24.>

(

) 29 2

30

15

()

()

(

)

.< 2008.3.14., 2013.3.24.>

1

2

3

29 6

.< 2017.9.22.>

21 () 15 15 1 " 10 "

" 10 7 " .< 2016.12.8., 2017.9.22.>

[2015.7.7.]

22 () 33 1 , ,

(" ") 17 () (

)

.< 2008.3.14.,

2009.7.1., 2009.8.19., 2012.11.30., 2013.3.24., 2015.1.8., 2015.12.31., 2016.12.8.>

1. 36 8

가. 가 ,

「 』 가

- 2.
- 3. ()
- 4. (5)) ,
- 5. 「 』 ()
- 6. (,)
- 1 「 』 36 1
- 1 .<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 1. ()
- 2. () .< 2009.7.1.>
- 1 2
- 1.
- 2. 3
- 3.
- 4. ()
- 1 4 .<
-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 1. 36 8
- 2. 4
- 3.
- 33 1 18
- .<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 5 .
- .< 2008.3.14., 2009.7.1.,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 1.
- 2.
- 3.
- 4. ()
- 5. .
- 6. ()
- 7.
- 33 1 6 (7) 30 19
- .< 2008.3.14.,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22 2() 33 3 (17 ()) 22 1) 22 1 2 6 . < 2013.3.24., 2015.1.8., 2016.12.8.>

1 6 22 4 6 . < 2013.3.24., 2015.1.8., 2016.12.8.>

1 2 . < 2013.3.24., 2015.1.8., 2016.12.8.>

[2012.11.30.]

23 () 33 2 4 .

24 () 가 30 25 「 가 2 2 「 2 6 가 . < 2008.3.14., 2012.2.27., 2013.3.24., 2016.12.8.>

가 . < 2008.3.14., 2013.3.24., 2016.12.8.>

1. 10 25 ()

2. 가 「 」 가 가 가 2 1 가 1 . < 2008.3.14., 2013.3.24., 2016.12.8.>

25 () 24 1 2 1 ,가

1. (" ")가 20 : 1

2. 20 50 : 2

3. 50 : 3

26 () 25 1 20 , 26 21 .

26 2() 41 2 (41 2) 21 2 . < 2015.1.8.>

- 1. ()
- 2. 21 3 ()
- 3.
- 4. (「 」 89)
- 5. (25 2)
- (24 1)가
- 25 2

.< 2015.1.8.>

- 1.
- 2. . . . 가
- 3.
- 4.
- 5.
- 6.
- [2012.11.30.]

26 3() 21 4 21 5
 . < 2013.3.24.,
 2015.1.8.>
 [2012.11.30.]

26 4() 41 3 1 8 " 가
 26 2 1 5
 . < 2013.3.24., 2015.12.31.>
 [2012.11.30.]

27 () 50 1 " " 5
 < 2008.3.14., 2013.3.24.>

28 () 50 4 22

29 () 52 6
 1
 2
 .< 2008.3.14., 2013.3.24., 2015.1.8.>

30 () 3 ()
 3) .<
 2017.9.22.>

1. 6 : 2017 1 1

- 2. 15 2 : 2017 1 1
- 3. 15 12 : 2017 1 1
- 4. 16 : 2017 1 1
- 5. 19 3 : 2017 1 1
- 6. 20 : 2017 1 1
- 7. 23 4 : 2017 1 1
- 8. 25 : 2017 1 1

[2017.1.2.]

< 413 ,2008.2.27.>

- 1 () .
- 2 () 285
- 2005 1 1
- (
-) 3 .
- 3 () 32 33
- 가 (10
-) ,
- 24 25 .
- 4 () .
- 4 1 " 26 2 " "ㄱ" ㄱ 24 2 " .
- 2 가 "ㄱ" ㄱ 24 " "ㄱ" ㄱ 22 " , "ㄱ
- ㄱ 23 " "ㄱ" ㄱ 21 " .

< 4 ,2008.3.14.>(가)

< 91 ,2009.1.13.>

< 110 ,2009.3.26.>()

< 147 ,2009.7.1.>()

1 () 2009 7 1

2 (「 」) 「 」 1
9 가

< 158 ,2009.8.19.>

1 () 2010 1 1

2 () 22 1

3 ()

3

< 218 ,2010.1.29.>(가)

1 ()

2 ()

3 3 9 2 " 「 」 11 2 1 2 " " 「 가
」 33 1 2 "

< 350 ,2011.4.11.>()

< 392 ,2011.10.19.>

< 410 ,2011.12.13.>

3

< 445 ,2012.2.27.>

1 ()

2 ()

가 1

3

< 540 ,2012.11.30.>

1 () 2012 12 2 .

2 () .

3 () 15 6 2 1 " . "

2013 6 30 " . "

15 6 2 1 .

10429

2

< 1 ,2013.3.24.>()

1 () .

2 4

5 5 () <62>

<63>

2 1 , 2 , 4 · 6 , 3 3 , 3

2, 4 4 , 5 3 , 6 1 . , 3 , 7 1 , 8

, 10 2 , 3 , 10 2 1 , 11 , 14 2

, 15 1 · 2 , 15 9 2 , 15 12 2 , 16 1 ,

2 , 4 , 5 , 17 1 · 3 ,

4 , 20 1 · 2 , 3 , 22 1 , 2

, 4 . , 5 , 6 , 7 ,

22 2 1 , 3 · 4 , 24 1 , 2 , 3 ,

26 3, 29 3 , 30 , 2 2 , 3 1 , 1 , 2 ,

3 , 4 , 5 , 7 , 7 2

, 8 , 9 2 , 10 , 11

, 12 , 13 , 14 , 15 ,

17 , 18 , 19 , 20 , 21

22 " " " " .

4 1 , 9 1 · 2 , 12 , 15 5 , 26 4

27 " " " " .

1 , 7 2 , 9 2 ,
10 , 11 , 13 , 17
19 20 "

" " " .
18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 63 ,2013.12.30.>()

2014 1 1 .

< 111 ,2014.11.19.>

< 119 ,2014.12.16.>

< 127 ,2014.12.31.>()

< 134 ,2015.1.8.>()

1 () .

2

3 () ⑰

⑱ .

2 1 , 2 , 4 • 6 , 3 2, 4 2
, 10 1 , 2 , 10 2 1 , 11 , 14 ,
14 2 , 15 1 • 2 , 15 3 1 , 2 , 15
7 2 , 15 8 3 , 15 9 1 , 15 10 2 , 15 11 1 , 2 ,
16 1 , 2 , 4 ,
5 , 17 1 • 3 , 22 1 , 2 , 4
• , 5 , 6 , 7 , 22 2 1 ,
3 • 4 , 26 2 1 , 3 , 26 3, 29 3 ,
2 1 , 1 , 2 , 6 , 7 ,

7 2 , 8 , 9 , 9 2 , 10 , 10 3 ,
 11 , 12 , 13 , 14 , 17 ,
 18 , 19 , 20 , 21 22 " "
 " " " .
 2 2 8 , 1 , 6 , 7
 2 , 9 , 9 2 , 10
 , 10 3 , 11 , 13 ,
 17 19 " " "
 " .
 3 " " " " ,
 18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
 21 4 21 5 " " " " .

⑰

< 150 ,2015.7.7.>

1 () . , 10 3, 10 4, 2 3 .
 7 3 2016 7 1 .
 2 () 15 3 1
 가 14 .
 3 ()
 5 3 4 3 5 3
 4 .
 4 () 15 6 1
 [「 」 (540)
 4 1] 15 9 1 .

< 178 ,2015.12.31.>

< 210 ,2016.12.8.>

< 217 ,2017.1.2.>()

- 1 ()
- 2

< 251 ,2017.7.28.>()

- < 258 ,2017.9.22.>
 - 1 () 2017 9 22 . , 15 9 2018 1 1
 - 2 () 1
- 2018 3 31 15 9 2
- 1 1 2

[별표 1] 삭제 <2015.7.7.>

[별표 2] <개정 2015.1.8.>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제5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여객선 보유량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 다만, 수면비행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3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합계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총톤수 500톤(속도가 30노트 이상의 선박인 경우에는 국제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1척 이상일 것
순항 여객운송사업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일 것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일 것

비고

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지역적으로 고립된 항로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여객선 보유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여객선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별표 2의2] <신설 2015.7.7.>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자본금 기준(제5조제6항 관련)

사업의 종류	자본금
내항 정기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미만인 경우: 2억원 이상 ·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 4억원 이상 ·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 10억원 이상
외항 정기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10억원 이상
순항 여객운송사업	50억원 이상
복합 해상여객운송 사업	50억원 이상

비고

여객선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별표 2의3] <개정 2016. 12. 8.>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제15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포함 내용	비 고
1.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에 관한 안전관리목표의 수립 나. 가목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과 이에 대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이행·유지 확인	
2.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가. 주된 사업소·영업소 및 선박별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체제 및 협조체제 나.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직무와 권한 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제	
3.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	가. 선박별로 풍속·파고 및 가시거리에 따른 출항정지 조건 나. 선박별·운항구간별로 각각 풍속·파고 및 가시거리에 따른 운항정지 조건	
4. 항해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지도에 관한 사항	가. 기점·종점 및 기항지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나. 항해경로 다. 운항시각 및 항해속력 라. 항로부근에 있는 암초, 수심이 얇은 곳 및 그 밖에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마. 선장이 위치보고를 하여야 하는 지점 바. 좁은 수로 또는 선박의 왕래가 잦은 항로 등의 경우 항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선장이 직접 선박을 조정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간 및 구간의 좌표 병기 사. 피항지(避航地) 아.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의 명칭 및 그 선박과의 교행 시간·교행위치	
5. 선장이 운항관리실	가. 승선인원 및 여객의 인적 사항이 기재	

<p>에 보고하는 여객선의 입항·출항 상황에 관한 사항</p>	<p>되어 있는 승선권의 보관 장소</p> <p>나. 승무하여야 하는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p> <p>다. 승선정원의 초과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p> <p>라. 출항항·출항시간 및 목적항</p> <p>마. 출항 또는 운항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위치</p> <p>바. 출항 전 운항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기상 및 해상상태와 현지항로의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그 기상 및 해상상태</p> <p>사. 항해 중 항로상 예상하지 못한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위치</p> <p>아.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 운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실</p> <p>자. 해당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항해 중 조난선박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p> <p>차.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의 종류와 그 수량</p>	
<p>6. 위험물 등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의 취급에 관한 사항</p>		<p>「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7. 여객의 승선과 하선, 화물을 싣고 내리는 행위 및 선박의 계류 등에 관한 사항</p>	<p>가. 여객의 승선과 하선 시의 질서유지 및 정원범위 안에서의 여객승선여부의 확인</p> <p>나. 운항관리자가 없는 기항지의 경우 여객의 승선과 하선 시의 질서유지의 방법 및 정원초과 예방대책</p> <p>다. 화물의 적정 선적 여부와 화물의 고정상태의 확인</p> <p>라. 입항 전 계류시설에 배를 대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운항관리자로부터의 확인</p> <p>마. 선박의 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p>	<p>여객정원, 총 화물 적재톤수, 차량종류별 적재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p>

	<p>바. 차량 및 일반화물 적재에 관한 사항 (차량대수, 화물의 적재톤수 등)</p>	
8. 선박과 그 밖의 수송시설의 점검과 정비에 관한 사항	<p>가.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른 월 1회 이상 여객선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p> <p>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른 출항 전 점검의 실시방법과 그 절차</p> <p>다. 선박을 대는 시설 및 여객승하선시설 등 육상시설의 점검</p> <p>라. 종선의 점검 및 정비</p> <p>마. 운항관리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선박점검 또는 입회 시 지적한 사항의 시정방법과 그 보고</p>	
9.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p>가. 선원 직책별 비상시 임무와 행동 시나리오</p> <p>나. 해양사고발생 및 의료구호조치 등의 경우 그 비상연락방법</p> <p>다.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여객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인력의 배치</p> <p>라. 사고현장의 보존</p> <p>마. 사고의 내용 및 원인 등의 조사</p> <p>바. 피해보상</p>	
10.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의 전달에 관한 사항	<p>가. 비상시 대피도면을 포함한 여객의 행동요령</p> <p>나. 여객의 승선과 하선 방법</p> <p>다. 여객의 위험물 등의 취급방법</p>	
11.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p>가.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운항</p> <p>나.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방법·실시시기·실시장소 및 교관요원 확보방법 등</p>	
12.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p>가.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의 관리 절차 수립</p> <p>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의 폐기</p>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되, 해당 선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가.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운항관리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p>확인·검토 및 평가 에 관한 사항</p>	<p>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내부 심사의 의무적인 시행 나. 문서화된 절차에 따른 내부 심사와 시 정조치의 시행</p>	
-------------------------------	---	--

[별표 3] <개정 2016. 12. 8.>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의 종류	선박 보유량		자본금	경영 형태	
내항 화물운송사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평수구역(平水區域) 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구역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사이 등으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보유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다만 유조선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 유조선을 1척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일반 화물운송		총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일 것	10억 원 이상일 것	「상법」상의 회사일 것
	수산물운송	활·선어운송	총톤수 20톤 이상의 활·선어운반선이 1척 이상 있을 것		
		냉동어운송	총톤수 80톤 이상의 냉동운반선이 1척 이상 있을 것		

비고

1. 선박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일반 화물운송을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각각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는 경우 자본금 및 경영형태에 관한 기준은 새로 추가하려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같은 호 라목의 행위만 해당한다)을 등록한 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박보유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4] <개정 2012.11.30>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사업의 종류	시설 및 경영형태
해운중개업	「상법」상의 회사일 것
해운대리점업	1. 「상법」상의 회사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다.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선박대여업	총톤수 20톤(부선은 100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선박관리업	1. 「상법」상의 회사일 것 2.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

비고

1. 해운대리점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한국해운조합이 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의 선박을 수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위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선박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7. 9. 22.>

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제출 또는 보고하는 자료(제27조 관련)

구분	해당 법조문	제출 또는 보고서류
1. 법 제14조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가. 사업계획서 나. 운임 또는 요금의 산출명세서 다.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운영과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가. 운항수입 명세서 나. 운항경비지출 명세서
3. 법 제19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해양사고 시 피해자 및 수하물에 대한 보호조치 사항 및 피해보상 내용
4. 법 제28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가. 운임표 나. 운임산출명세서
5. 법 제31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화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라 공표한 운임보다 싸거나 비싸게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가. 송장, 선하증권, 거래내역서 및 다른 국가에서 운임에 관하여 공표하거나 제출한 자료 나. 환급확인서 다. 그 밖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6. 법 제9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4호	가. 승선권 나. 사업계획서 및 운항 관련 서류
7. 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5호	운임 또는 요금의 산출명세서
8.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6호	사업계획서 및 운항 관련 서류
9. 법 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7호	가. 협약서 나. 운임표 및 운임산출명세서 다. 화주단체와의 협의한 내역

<p>10.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p>	<p>법 제50조 제1항제8호</p>	<p>가.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업상의 채무보증을 증명하는 서류(공증 포함)</p>
<p>11.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p>	<p>법 제50조 제1항제10호</p>	<p>가. 해상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과 운임수입 현황 나.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 경영에 따른 반기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밖의 부속서류) 다. 등록업체의 사업 실적 라. 분기별 일반현황(연혁, 대표자 이력 등) 및 주요 주주현황 마. 분기별 소유선박 및 운항선박 현황과 운항노선 현황 바. 분기별 용대선 현황, 용선료, 용대선의 선박운항명세서 사. 분기별 장기운송 계약현황 아. 분기별 선박(신조선, 중고선 등) 도입 및 매각현황</p>

비고

위 표 제11호의 제출 또는 보고서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수수료(제29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금액
<p>1.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가.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나.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다. 순항 여객운송사업 라.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p>	<p>1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p>
<p>2. 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 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나.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p>	<p>1만원 2만원</p>
<p>3. 해운중개업등 등록신청</p>	<p>3천원</p>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2.>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내항 여객운송사업: 13일 외항 여객운송사업: 9일
------	-----	------	---------------------------------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대표자)	

사업의 종류	운항개시예정일
--------	---------

항로구간	운항횟수
------	------

사업의 개요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	-------------

「해운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 국적의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내항: 1만원 외항: 2만원 순항: 2만원 복합: 2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8.>

면허번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제 호								
① 상호(명칭)				② 설립연월일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소재지								
사업 내용 의 표시	⑥ 사업의 종류							
	⑦ 대상선박	선박명	총톤수	건조연월일	여객정원	항해속력	기타	
	운 항 계 획	⑧ 항로						
		⑨ 출발지		⑩ 종착지				
		⑪ 기항지		() 개소				
⑫ 운항횟수		회						
⑬ 영업소명								
⑭ 면허조건								
<p>「해운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인</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5.7.7.>

항로 개설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본사 전화번호	
		지사		지사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신청 개요	사업종류				
	항로	출발지	종착지	총 운항거리	
		기항지	기항지간 운항거리		마일
					마일

「해운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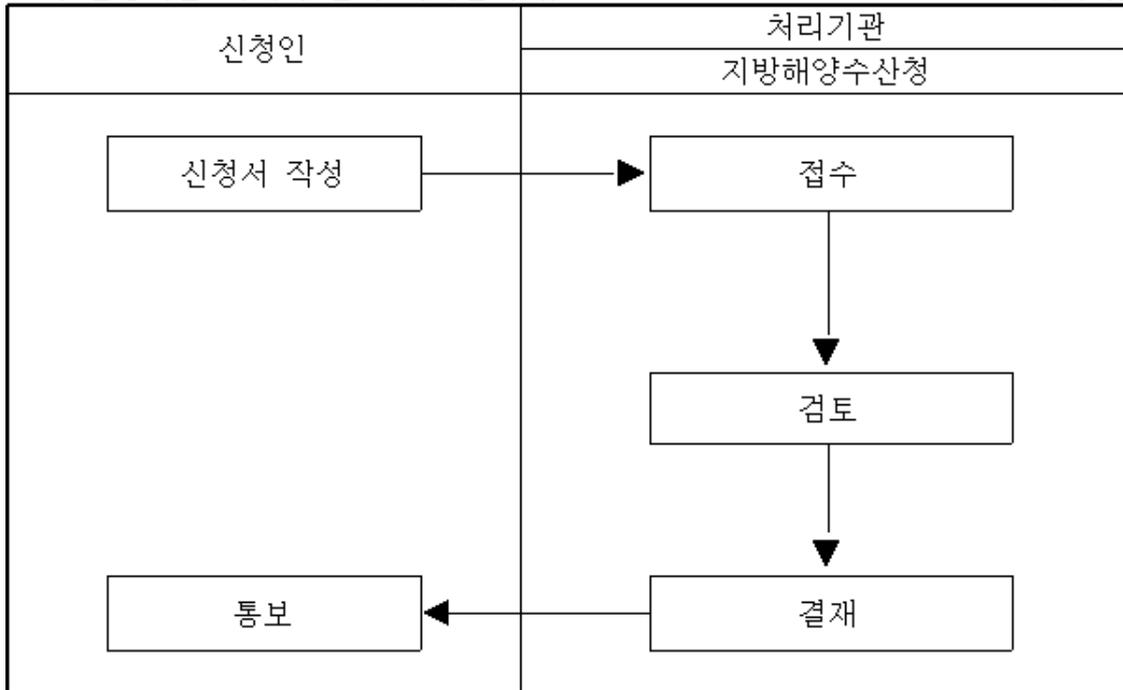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승인번호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						
제 호								
① 상호(명칭)		② 국적						
③ 성명(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내 용 의 표 시	⑥ 사업의 종류							
	⑦ 대상선박		선박명	총톤수	건조연월일	여객정원	항해속력	기타
	운 항 계 획	⑧ 항로						
		⑨ 출발지		⑩ 종착지				
		⑪ 기항지		() 개소				
⑫ 운항횟수		회						
⑬ 영업소명								
⑭ 승인 조건								
<p>「해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수산부장관 인</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 <개정 2015.1.8.>

운송약관 [] 신고서
 운송약관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운항형태
	신고 또는 변경 사유	

「해운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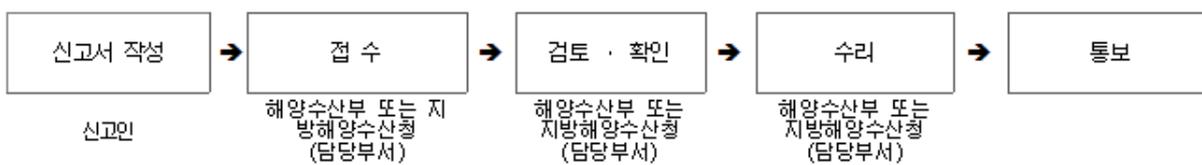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지방해양수산청장

첨부서류	1. 운송약관 1부 (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운송약관 신·구대비표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15.7.7.>

여객선 안전정보

공개자	업체명		
	소재지	본사	본사 전화번호
		지사	지사 전화번호
공개 개요 (최근 3년간)	선박 명세	선명	선령
		선종	총톤수 G/T
		여객정원 명	운항속력 (노트)
		화물의 적재 한도 톤	
	선박 검사 및 결과		
	해양 사고 이력		
	안전 규정 위반 이력		
	운항 관리 규정	심사일자: (최초) (변경) 운항관리규정: 세부사항 별첨	

「해운법」 제 11 조의 3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 조의 4 제 3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 합니다.

년 월 일

공개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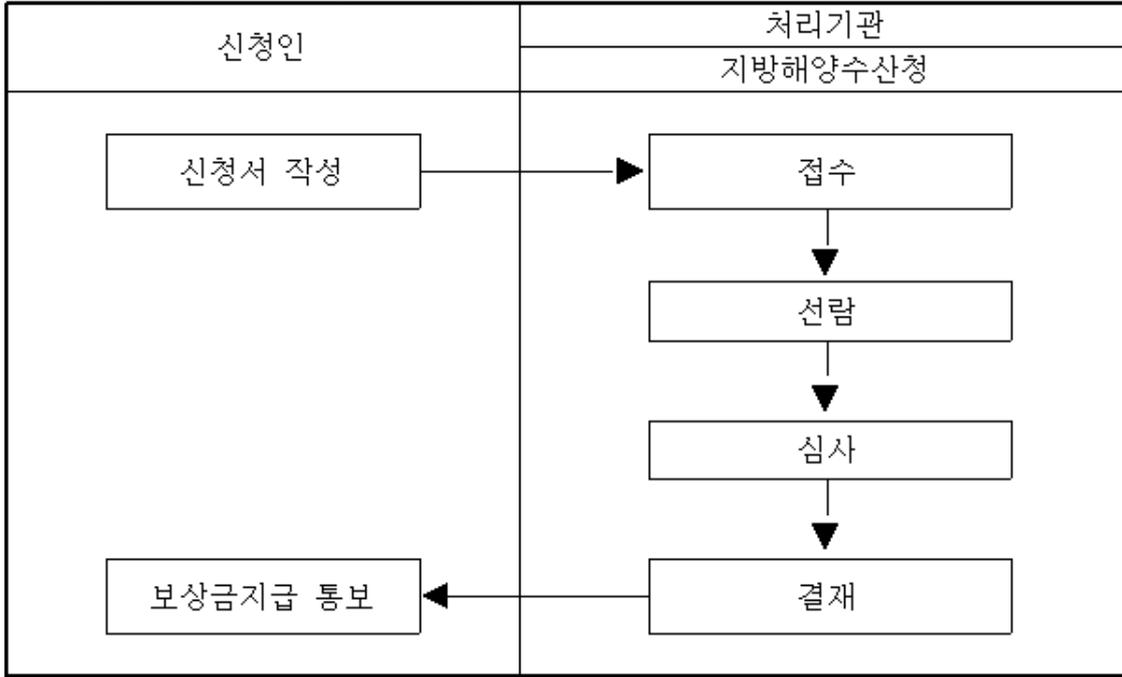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8.>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⑤ 운항항로			
⑥ 운항선박			
⑦ 운항기간			
⑧ 수입액		원	
⑨ 지출액		원	
⑩ 보상금 청구액		원	
<p>「해운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1.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없음	
2. 수입 및 지출 증거서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5.1.8.>

해상여객운송사업 [] 휴업 신고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폐업 신고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휴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 2일 허가: 7일
신고인 (신청인)	상호(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및 내용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해운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허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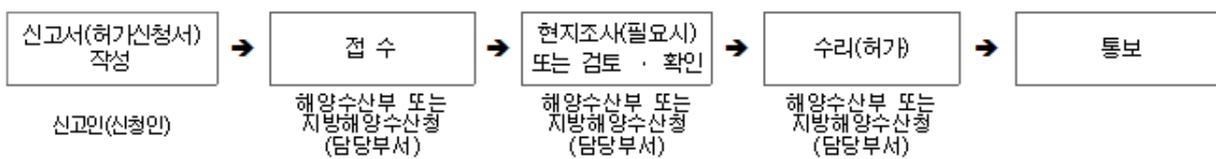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서식] <개정 2015.7.7.>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제 출 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본사 전화번호		
		지사	지사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 업 의 개 요	선박 명세	선 명	선박번호		
		선 종	총톤수	G/T	
		여객정원	명	평균속력(노트)	
	항로	기점항	종점항		
		기항지 수	개소	항로거리	마일
		운항시간	시간	분	
	운항 계획	출항시간	시	분	
		회항시간	시	분	
		운항횟수	편도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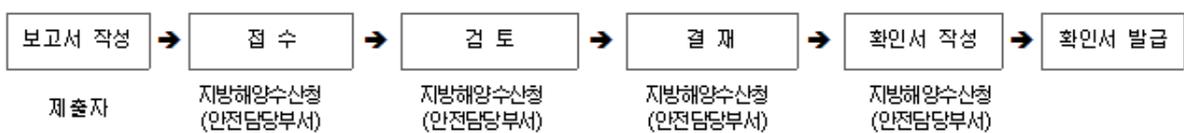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운항관리규정	수수료 :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 서식] 삭제 <2015.7.7.>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 서식] 삭제 <2015.7.7.>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6서식] <신설 2015.7.7.>

제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선 명 :

선박번호 :

항 로 :

사업자명 :

사업자 주소 :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의 7서식] <신설 2015. 7. 7.>

해상화물운송사업 [] 휴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 2일
신고인 (신청인)	상 호(명칭)	설립 연월일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및 내용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해운법」 제18조제1항·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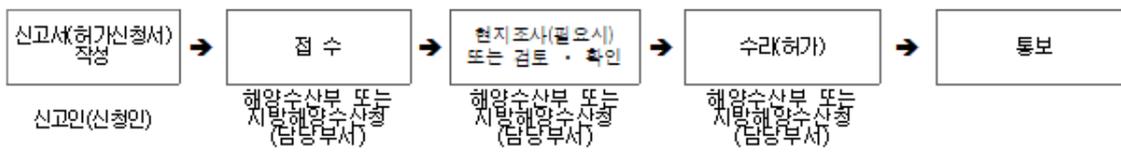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결용품)]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서식] <개정 2017. 9. 22.>

해상 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대표자)			
사업의 종류		운항개시예정일	
항로		운항횟수	
사업의 개요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해운법」 제 24조제 1항·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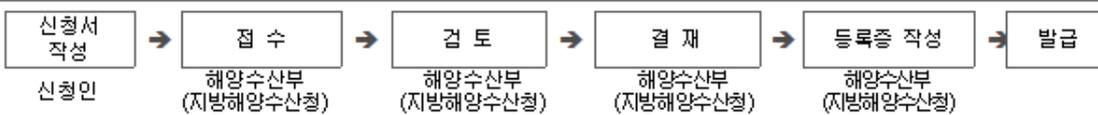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 2조제 1항제 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수수료 내항: 1만원 외항: 2만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 2조제 1항제 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 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중 제 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결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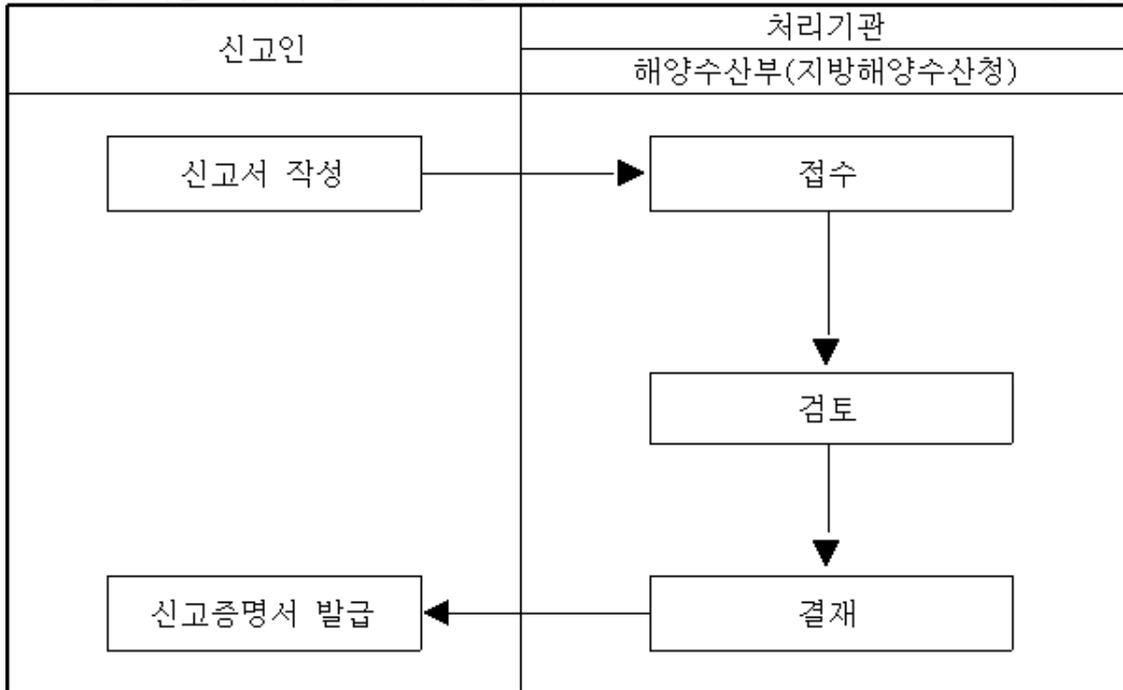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8.>

등록번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제 호				
① 상호(명칭)		② 설립연월일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사업 내용의 표시	⑥ 사업의 종류			
	⑦ 자본금			
	운항 계획	⑧ 항로		
		⑨ 선박명		
		⑩ 정기항로	출발지:	도착지:
⑪ 기타				
⑫ 등록조건		별첨과 같음		
<p>「해운법」 제2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 14호서식] <개정 2017. 9. 22.>

제 호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

신고인	상호(명칭)			
	주소			
신고 수리 내용	선박명(총톤수)	운송 화물(톤)	운송 구간	운송기간
조건	신고한 내용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해운법」 제 25조제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제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외 사업 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에 대한 수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별지 제16호서식]

선박운항계획서

신고일자:

신고인:

① 항로 (FM/TO)	② 선박명	③ 선박의 종류	④ 총톤수 (G/T)	⑤ 적재능력 (D/W, TEU)	⑥ 속력 (노트)	⑦ 배선간격	⑧ 기항지	⑨ 운반형태	⑩ 선주 (OWNER)	⑪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전의 내용과 변경 후의 내용을 대비하여 기재하십시오.

210mm × 297mm(9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7. 9. 22.>

[] 해운중개업 [] 선박대여업 등록(갱신)신청서
 [] 해운대리점업 [] 선박관리업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기준지(대표자)		
계약상대방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국적선박현황	선명	선박번호	
사업개시예정일			
등록갱신 기간			

「해운법」 제3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해운법」 제8조의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7. 등록증 원본(등록갱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등록갱신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3천원 (갱신: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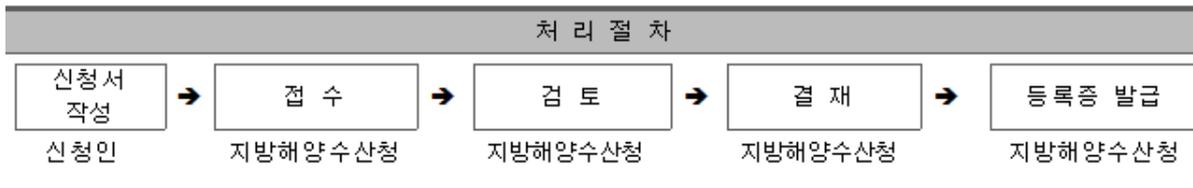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6. 12. 8.>

등록번호 제 호

Registration No.

해운업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Shipping Business

사업의 종류:

Business Type:

상호:

Company name:

성명(대표자):

Representativ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유효기간:

Period of Validity:

최초 등록일:

Beginning Date of Registration:

「해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s duly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Maritime Transport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년 월 일

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

seal

210mm × 297mm [백상지 (1종) 120g/㎡]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2. 8.>

[] 해운중개업 [] 선박대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해운대리점업 [] 선박관리업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해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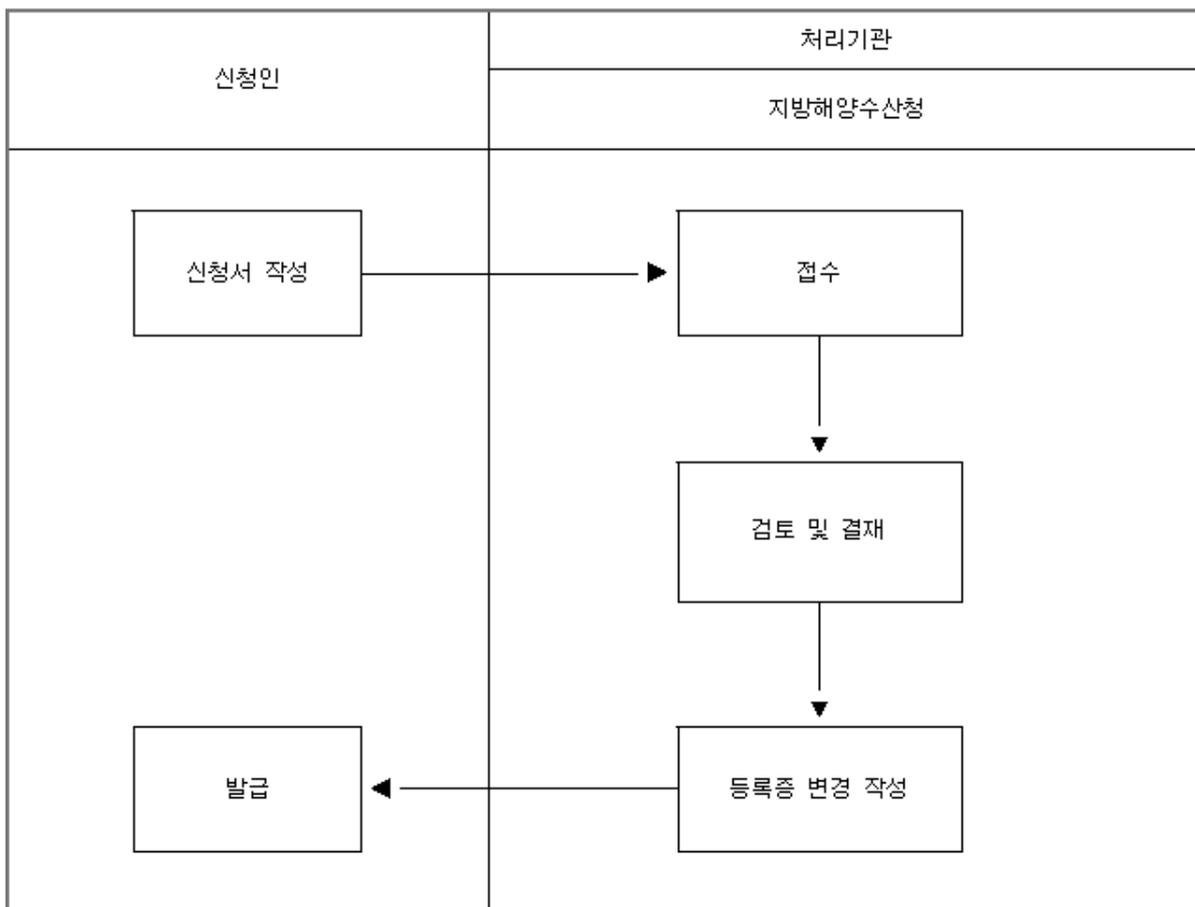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1.8.>

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보관용)

과징금영수필통지서(해양수산부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기관보관용)

① 발행번호	
② 상호(명칭) 납부자	성명(대표자)
③ 위반일자	
④ 위반행위	
⑤ 납부금액	원
⑥ 납부기한	
⑦ 수납기관	
<p>「해운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해양수산부장관 [인] 수납인 (지방해양수산청장)</p>	

① 발행번호	
② 상호(명칭) 납부자	성명(대표자)
③ 위반일자	
④ 위반행위	
⑤ 납부금액	원
⑥ 납부기한	
⑦ 수납기관	
<p>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수납기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수납인 (지방해양수산청장)</p>	

① 발행번호	
② 상호(명칭) 납부자	성명(대표자)
③ 위반일자	
④ 위반행위	
⑤ 납부금액	
⑥ 납부기한	
⑦ 수납기관	
<p>위와 같이 영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수납기관</p>	

297mm × 210mm(일)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1.8.>

발행번호 제 호		독촉장
사업자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소	
④ 위반행위종별		
⑤ 과징금액		원
⑥ 지정수납기관		
<p>위 금액을 , 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하오니 지정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p>		
<p>공지사항: 위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운법」 제20조·제32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신설 2012.11.30>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1.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조금 송금처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거래내역

연번	선종	선명	총톤수	사용유종	단가 (원/ℓ)	주유량 (ℓ)	금액 (원)

3. 유가보조금 청구액

연번	사용유종	유류 사용량		단가(원/ℓ) (C)	보조금액(원) (BxC)
		총 주유량(ℓ) (A)	경유 함유량(ℓ) (B)		

신청인
제출서류

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1부
2.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89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않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운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주유량(A)은 사용유종의 총 주유량을 의미합니다.
- * 경유함유량(B)은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실제 공급받은 경유 주유량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을 주유받았다 하더라도 경유 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주유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 '거래내역' 란의 연번과 '보조금청구액' 란의 연번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신설 2012.11.30>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이 확인서가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로 작성됨을 인지하고 다음에 적은 석유제품을 판매(공급) 및 인수하였음을 판매(공급)자와 인수자간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 주의 : 이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을 적는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와, 「해운법」 제41조의3 및 「해운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주유일자	주유선박	인수지	유종	총 주유량(ℓ)	경유합유량(ℓ)*

※ 경유합유량(ℓ)은 주유된 “경유” 주유량을 의미하며,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Blending)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경유량을 별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경유가 포함된 제품을 주유한 경우에도 그 제품이 경유 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인 경우 이를 제외하고 경유합유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석유제품 판매(공급)자	석유제품 인수자
소속(회사명) :	소속(회사명) :
선명 :	선명 :
직책(담당) :	직책(담당) :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8.>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진
(4cm × 5cm)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해운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선박·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서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인]

81mm × 55mm(일반용지 60g/㎡)